

일본의 PL제도 해설

제조물의 책임

제3조 제조업자등은 그 제조, 가공, 수입 또는 전조 제3항 제2호 혹은 제3호의 氏名등의 표시를 한 제조물로서 그 넘긴 것의 결함으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침해를 한 때는 이로 인하여 생긴 피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그 손해가 당해 제조물에 대해서만 생긴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I 제조물 책임

취지

본조는 제조업자등이 질 제조물 책임의 책임근거 규정이며 고의 또는 과실을 책임요건으로 하는 불법행위(민법 709조)의 특칙으로서, 결함을 책임요건으로 하는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한 것이다.

조문의 해석

1. 「제조업자등은 그 제조, 가공, 수입 또는 전조 제3항 제2호 혹은 제3호의 氏名등의 표시를 한 제조물로서의 의의」

본 법 제2조 제3항의 정의에 해당하는 제조업자 등이 틀림없이 당해 손해배상의 청구원인에 관계되는 사고를 생기게 한 결함이 있는 제조물을 제조, 가공 혹은 수입 또는 당해 제조물에 제2조 제3항 2호, 3호에 상당하는 표시를 한 것이 요건이 된다.

2 「그 넘긴 것의 결함」의 의의
「넘김」은 스스로의 의사에 따

라 접유를 이전시키는 것을 말한다. 유상무상은 불문한다. 또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넘긴 제조물의 결함에 책임요건이 한정되기 때문에, 예를들면 제조업자등의 창고에서 도둑맞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제조업자등이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또한, 「결함」에 대해서는 제2조 제2항을 참조할 것.

3. 「결함으로 인하여」의 의의

제조물의 결함에 기인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제조업자 등에 대하여 추궁하기 위해서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당해 손해가 생겼다고 말할 수 있는것, 즉 결함과 손해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이 필요하다.

4.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침해한 때」의 의의

본 법에 있어서 보호법익은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이다. 이 경우의 「사람」에는 자연인 뿐만 아니라 법인도 포함된다.

또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고 정신적 손해만이 발생했다고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본 법에 의거한 배상청구권은 생기지 아니한다고 해석된다.

(참 고) 입증책임의 원칙

본 법에서는 제조물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의 입증책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에 있어서 제3조 본문에 의해 정해진 요건을 입증하는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현행의 불법행위제도 하에 있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에 있어서 과실, 손해의 발생, 과실과 손해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책임을 지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조물책임의 경우에는 「과실」이 「결함」으로 변경되는 점을 제외하고는 입증책임의 원칙 그 자체는 변경되어 있지 아니하는 것이다.

또한 현행의 재판실무와 결함과 인과관계 존재의 인정에 있어서는 개개사안의 내용, 증거의 제출상황등에 따라 경험 칙과 사실

상의 추정등을 유연하게 활용함으로써 사안에 따른 공평한 피해자의 입증부담의 경감을 도모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제기될 수 법의 사안에 따른 유연하고 또한 적극적인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Ⅱ. 손해배상의 범위

취지

본 법에 의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의 발생을 당연히 요건으로 하는 것이지만, 그 범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불법행위 책임으로 채용되고 있는 상당인과관계에 의해 판단된다.

다만 소위 「확대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의 제조물자체의 손해는 본 법의 배상의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조문의 해석

1. 「이로 인하여 생긴 손해」의 의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범위에 대해서는 판례는,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에 관한 민법 416조의 규정을 유추적용하고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범위마다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는 사고에 따라 처리를 하고 있다.

제조물책임은 책임원인을 「과실」에서 「결합」으로 변경하는 것 이지만 그 본질은 불법행위 책임으로서 일본 종래의 과실책임

에 의거하는 손해배상범위에 관한 판례·실무에 입각하여 입법화한 것이기 때문에 제조물책임에 대해서만 불법행위에 있어서 손해론의 일반론을 변경해야 할 특단의 이유는 없으며 민법 416조 규정의 유추적용에 의해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

2 「다면, 그 손해가 당해 제조물에 대해서만 생긴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의 의의

소위 확대손해(인적손해 또는 결합있는 제조물자체의 손해이외의 물적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제조물자체 손해는, 손해배상의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설사 「확대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당해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가 그 제품자체에만 머무는 경우에는 결합있는 제품자체의 손해와 결함에는 이르지 아니하지만 품질상의 하자에 관한 부당한 크레임에 의한 남용의 우려가 있고 이것을 배제해야 할 정책적인 요청을 고려하여 당해 결합제품 자체의 손해는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 책임에 의한 구제에 위임하고 제조물책임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것이다.

다만, 일단 「확대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설사 「확대손해」 결합책임에 의해 결합제품자체의 손해는 계약책임 등으로 처리한다고 하게 되면 청구의 상대방 주장·입증의 대상이 되는 책임 요건등이 각각 달라지게 되며

피해자의 부담이 과대해 질 우려가 있다.

이 경우에는 불법행위제도의 기본원칙에 따라 제조물자체의 손해도 배상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관련사항

1. 정신적 손해의 취급

종전의 판례실무에 따라 정신적 손해도 당연히 손해배상의 대상에 포함된다.

2 일실이익의 취급

일실이익이 배상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상당인과관계의 법리에 따라 판단할 수 있고 합리적인 범위에서 인정할 수 있게 된다.

3 사업자에게 생긴 인적손해 이외의 피해취급

제품사고의 피해자가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이었던 경우 또는 피해의 대상이 사업용재산이었던 경우에도 상당인과관계에 따라 계획된 범위내에서 사업자에게 생긴 손해 또는 사업용재산에 생긴 피해도 배상의 대상이 된다.

4. 징벌적 배상, 면책액, 책임한도액의 불채용

본 법에 있어서는 제외국의 일부에서 볼 수 있는 징벌적배상, 면책액 및 책임한도액의 사고는 채용하지 아니하였다.

면책사유

제4조 전조의 경우에 있어서 제조업자등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증명한 때는 동조에서 규정하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당해 제조물을 그 제조업자 등이 넘긴 때에 있어서 과학 또는 기술에 관한 지견에 의해서는 당해 제조물에 그 결함이 있는 것을 인식할 수가 없었던 것.
- 당해 제조물이 다른 제조물의 부품 또는 원재료로서 사용된 경우에 있어서 그 결함이 단지 당해 다른제조물의 제조업자가 행한 설계에 관한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인하여 생기고 또한 그 결함이 생긴것에 대해 과실이 없는 것.

I. 본조의 취지

본 조는 제3조에 의거하여 제조업자 등이 제조물책임을 지는 경우에 당해 제조업자가 일정한 사정을 입증함으로써 제3조에서 규정하는 배상책임을 면제하는 취지이며 민법의 기타 법률에 따라 생긴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 까지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으로는 소위「개발위기의 항변」 및 소위 「부품·원재료제조업자의 항변」의 2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II. 개발위험의 항변

취지

개발위험이란, 제품을 유통에 내놓은 시점에 있어서 과학, 기술 지식의 수준에 따라서는 거기에 내재하는 결함을 발견하는 것이 불가능한 위험을 말한다.

이와 같은 개발위험에 대해서 까지 제조업자 등이 책임을 지게

한다면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이 저해되고 더 나아가서는 소비자의 실질적인 이익을 해치게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당해 결함이 개발위험에 상당한다는 것을 제조업자 등이 입증한 때 제조업자 등을 면책하는 개발위험의 항변이 필요하다.

또 개발위험을 항변으로 명시함으로써 고도한 과학·기술지적에 관계되는 예전가능성에 관한 증명책임이 제조업자 등에게 돌아오는 것이 명확해지고 심리의 신속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제외국에 있어서도 많은 나라에서 개발위험의 항변이 인정되고 있다.

조문의 해석

1. 「과학 또는 기술에 관한 지견」의 의의

본 조에 있어서 「지견」이란, 결함의 유무를 판단하는데 있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정도로 확립

된 지식의 모두이며 특정한 자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사회에 존재하는 지식의 총체를 지칭하는 것이다.

개발위험의 항변에 의해 면책받기 위해서는 당해 결함의 유무 판단에 필요로 하는 입수가능한 최고수준의 지식에 비추어 결함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2 「당해 제조물에 결함이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없었던 것」의 의의

개발위험의 항변은 재판에 있어서 당해 제조물이 결함을 가졌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피고가 입증을 하고 제조물이 넘겨진 때에 과학 또는 기술의 지견에 의해서는 이것을 인식할 수 없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 때 그 피고를 면책으로 하는 것이다.

피고로 된 구체적인 개개 기업의 기술수준에 따라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Ⅲ. 부품·원재료 제조업자의 항변

취지

제조물책임이 당해 제조물의 결합존재에 침입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것인 이상 부품·원재료라 하더라도 결함이 존재한 경우에는 그 제조업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그러나 「당해 제조물이 다른 제조물의 부품 또는 원재료로서 사용된 경우」 그 부품·원재료가 조립된 다른 제조물의 제조업자가 행한 설계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않을 수 없었고, 게다가 결함이 생긴다고 하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설계에 간한 지시」의 의의에서 지시에 따른 부품·원재료 제조업자에 대해서는 지시를 한 제조업자와 같은정도 결합의 회피 가능성, 더 나아가서는 귀책성을 묻는 것은 적당하지 않으며 공평성이 결여되었다고 사료된다.

이 때문에 쓰여지는 부품·원재료 제조업자에 대해서는 그 결함이 이러한 것을 조립된 다른 제조물의 제조업자가 행한 설계에 관한 지시만으로 기인하는 것이다.

그 결함에 대하여 과실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때에는 정책적 관점에서 그 책임을 면책하기로 한 것이다.

전문의 해석

1. 「당해 제조물이 다른 제조물의 부품 또는 원재료로서 사용된 경우」의 의의

당해 제조물이 다른 제조물의 부품 또는 원재료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당해 제조물의 제조업자 등이 부품 또는 원재료로서 넘겨 주었는지 여부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다른 제조물의 부품 또는 원재료로서 실제로 사용되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된다.

또한 본항변에 있어서는 「다른 제조물의 부품 또는 원재료로서 사용된 경우」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제조물」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직접 짜맞추어진 부품·원재료의 제조업자 등에 대해서는 본항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설계에 관한 지시」의 의의

본 항변은 부품·원재료 제조업자의 손을 떠난 때에 이미 당해 부품·원재료 설계상의 결함이 존재하고 있으며 그 결함이 단지 「설계에 관한 지시」에 의해 생긴것이라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의 「설계에 관한 지시」에 대해서는 당연히 당해 부품·원재료설계에 구체적인 변경을 가져오는 것 또는 설계자체를 지정하는 내용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그 결함이 단지 그 지시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당해 부품·원재료 제조업자가

주어진 지시를 전제로 하여도 그 결합있는 설계로 대체할 수 있는 설계를 당해 제조업자가 놓여진 제반상황을 바탕으로 한 후에 채용할 수 있었다고 통상 판단되는지 여부로 결정되어지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 경우 지시의 형태에 대해서는 설계도 그 자체인 경우, 구조를 지정하는 것인 경우, 성능과 사양을 지정해 오는 경우를 비롯하여 구조물의 특성에 따라 여러 가지 케이스를 생각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당해 부품·원재료에 대한 설계도에 한하지 아니하고 그 구조, 재료, 재질, 성능, 사양 등의 지정이 포함된다.

3. 「그 결함이 생긴 것에 대해 과실이 없을 것」의 의의

피고가 되는 부품·원재료 제조업자가 본호에서 규정하는 항변의 적용을 요구하는 경우에 있어서 스스로 무과실을 증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당해 부품·원재료 제조업자의 기술적 수준, 그 업태와 발주자와의 관계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문제가 되어 있는 결합의 발생에 관한 예전가능성 또는 결과회피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면, 「과실이 없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게 된다.

기간의 제한

제5조 제3조에서 규정하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배상의무자를 안 때부터 3년간 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에 의해 소멸한다. 그 제조업자등이 당해 제조물을 넘겨준 때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같다.

2 전항 후단의 기간은 신체에 축적한 경우에 사람의 건강을 해치게 되는 물질에 의한 손해 또는 일정한 잠복기간이 경과한 후에 증상이 나타나는 손해에 대해서는 그 손해가 생긴 때 부터 기산한다.

취지

본 조는 법적 안정성 확보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일정한 기간의 경과에 따라 제3조에 의거하는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취지이다.

조문의 해석

(1)「제3조에서 규정하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배상의무자를 안 때부터 3년간 하지 아니할 때는 시효에 의해 소멸한다.(단기소멸시효)의 의(제1항 전조)

불법행위에 있어서 채권소멸시효의 일반원칙(민법 제167조 제1항 「채권은 10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에서 단기의 시효기간이 규정되어 있는 근거로서, ①책임유무의 명확화, 손해액의 확정의 필요성 등으로부터, 벌률관계를 될 수 있는 한 조속히 확정할 필요가 있는 것, ②가해자를 알고 3년이나 권리자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것은 보호의 가치가 없다는 것 등의 이유를

들 수 있으며, 본조도 같은 취지에 의한 것이다.

2 「그 제조업자 등이 당해 제조물을 넘겨 준 때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같다.(장기의 기간제한)의 의의(제1항 전조)

상기의 불법행위에 관계되는 단기의 소멸효과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알때」를 시효의 기산점으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손해 및 가해자를 알지 못하는 한 영구히 책임이 존속하게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사회안정의 관점에서 불법행위에 있어서는 「불법행위의 시점부터 20년」의 장기의 기간제한을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724조 후단).

또한 이 기간은 판례에 의하면 소멸시효와 달리 중단이 없는 제척기간으로 해석된다.

본 법에 있어서는 이와같은 사고에 입각하여 기산점 및 기간에 대하여 ①근년 기술혁신의 진보가 한층 급속해지고 있고 제조물의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인 통념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것에 덧붙여 ②제조물의 유통사용

기간 · 내용기간(비교적 장기로 사용되는 제조물이라도 평균적인 내용기간은 10년정도, 사용기간은 7년정도이다) ③검사기록 등의 보존기간 ④제외국에서의 입법례를 감안하여 제조물을 넘긴 시점부터 10년간으로 규정하였다.

3 「신체에 축적한 경우에 사람의 건강을 해치게 되는 물질에 의한 손해 또는 일정한 잠복기간이경과한 후에 증상이 나타나는 손해에 대해서는 그 손해가 생긴 때부터 기산한다.)」장기 기간 제한의 특칙)의 의의(제2항)

본 법에서는 제조물책임의 성격을 고려하여 제조업자등이 당해 제조물을 넘겨준 때부터 10년의 제소기간(책임기간)을 두었지만 제조물의 결함에 기인하는 손해중에는 ①신체에 축적한 경우(體留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사람의 건강을 해치게 되는 물질에 의해 생기는 손해 ②사용시부터 일정한 잠복기간을 거친 후에 증상이 발현하는 것 같은 손해도 있으며 이러한 것은 모두 제조물의 사용개시 후 일정한 기간을 두고 예상외의 손해가 생기는 것이다.

이와 같은 손해에 대하여 제조물의 통상사용기간을 전제로 하는 제소기간(책임기간)을 적용하면 그 기간(제조물을 넘긴 후 10년간)을 경과한 후에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본 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일체 제기할 수 없게 된다.

이 때문에 본 법에서는 피해자 보호의 관점에서 이와 같은 손해인 경우 책임기간의 기산점을 「손해가 생긴 때」라 하는 특칙을 두기로 한 것이다.

생하여 복수의 책임주체가 손해배상의무를 지는 경우 그 책임주체간에 있어서는 손해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담부분이 결정되게 된다. 복수의 책임주체 중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무를 이행한 자는 자기의 책임부분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하여 타 책임주체에 대해 구상권을 취득하게 된다.

민법의 적용

제6조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는 이 법률의 규정에 따르는 외에 민법(明治29년 법률 제89호)의 규정에 따른다.

취지

본 조는 본 법이 과실책임주의에 의거하는 불법 행위 책임제도에 더불어 새로운 결함을 책임원인으로 하는 불법 행위 책임제도인 재조물책임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서 민법의 불법 행위 책임제도의 특칙이 되는 것이며 본 법에 특단이 정해지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민법의 규정이 적용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

민법 규정에 의한 규정의 예로서는 ①과실상살(민법 722조 2항) ②복수 책임주체의 관계(민법 719조) ③손해배상의 방법(민법 722조1항, 417조) 등이 있다.

I. 민법규정의 적용에

1. 과실상살

과실상살에 대해서는 불법 행위

에 일반적으로 적용된다는 뜻의 명문규정(민법 722조2항)이 있다. 과실상살은 가해자측에 전면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공평하지 아니하다는 사정이 피해자측에 있는 경우에 손해배상약을 감액하는 제도로 배상받아야 할 손해액을 정하는데 있어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한다고 하는 것이다.

2. 복수 책임주체의 관계

결함이 있는 제품으로 인하여 손해가 생긴 경우 완성품과 부품의 제조업자와 같이 복수의 책임주체가 존재하는 것이 있으며 또 그 손해가 제조업자 이외의 행위에도 기인하여 발생, 확대해서 과실책임을 지는 자가 존재할 수도 있으나 어떠한 경우에도 복수의 책임주체가 피해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결합제품으로 인한 사고가 발

3. 면책특약

면책특약의 효력에 대해서도 민법의 불법 행위의 원칙에 따른다. 자기의 제조물 책임에 대하여 면책특약을 붙였다 하여도 그 효력은 자기가 직접 거리상대방에게만 미치는 것인지 제조물이 넘 견진 모든 자에게 미치는 것은 아니다.

또 설사 사전에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 또는 면제한다는 뜻의 기재가 제품의 표시와 취급설명서 등에 있고 그 효력이 거래상대방과의 사이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에도 이 특약은 공서양속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민법 90조)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다(적어도 사람의 피해에 관한 면책특약에 대해서는 공서양속위반을 이유로 일률적으로 무효화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4. 금전배상의 원칙

불법 행위에 의거한 손해배상의 방법으로서는 민법 722조1항 및 417조에 의해 금전배상이 원칙이다.

부 칙(시행기일 등)

- 1.이 법률은 공포일로 부터 기산하여 1년을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이 법률의 시행후에 그 제조업자등이 넘긴 제조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 2.원자력손해의 배상에 관한 법률(昭和 36년 법률 제147호)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제3항중 「및 선박소유자등의 책임제한에 관한 법률」(昭和 50년 법률 제94호)를 「및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에 관한 법률」(昭和 50년 법률 제94호) 및 제조물책임법(平成 6년 법률 제85호)로 변경한다.

Ⅱ. 시행기일 등(제1항)

- 1.「이 법률은 공포일로 부터 기산하여 1년을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며」의 의의

부칙 제1항에 있어서는 본 법의 시행기일을 공포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1년을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며 이 법률의 시행후에 제조업자 등이 넘긴 제조물에 대하여 적용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주지·대응준비기간에 대해서는 제조물책임이라고 하는 개념이 일본에서는 전혀 새로운 것이다.

재판규범 뿐만 아니라 행위규범으로서도 가능한 것이며 사회 일반적으로 광범위한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초기단계부터 관계자에게 새로운 제도내용의 주지 및 대응준비를 위한 기간을 제시한다고 하는 관점에서 기간을 법률의 부칙으로 확정함과 아울러 그 기간을 1년으로 한 것이다.

이에따라 본 법은 1995년 7월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 2 「이 법률의 시행 후는 그 제조업자 등이 넘긴 제조물에 대하여 적용한다」의 의의

본 항에 있어서는 「법률의 시행 후에 그 제조업자등이 넘긴 제조물에 대하여 적용한다」로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민사법규에 있어서는 행위자에게 의무를 과한다거나 사람의 권리를 제한한다거나 하는 것은 법의 적용에 대하여 불소급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제조물책임의 귀책근거는 결합이 있는 제조물을 제조, 가공 혹은 수입 또는 일정한 표시를 하고 넘긴 것에 있기 때문에 본 법이 적용되는 것은 동법의 시행후에 넘겨진 제조물에 한한다는 것을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 Ⅲ. 「원자력손해의 배상에 관한 법률」(昭和 36년 법률 제147호)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이하 略)」의 의의(제2 항)

이번에 제조업자의 무과실책임 등을 규정하는 제조물책임법이 민법의 특별법으로서 제정되는데

있어서 원자로의 운전등으로 인하여 생긴 원자력손해에 대하여 원자료사업자의 무과실책임 및 당해 사업자에 대한 책임의 집중을 정하고 있는 「원자력손해의 배상에 관한 법률」의 사고를 유지하기 위하여 부칙 제2항에서 제기되는 손해에 대해서는 본 법의 적용을 제외하기로 하고 있다.



주 현 필
선임연구원
생산기술연구원